「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❍ 제 안 자 : 이창열 의원
- ❍ 제안일자 : 2024. 10. 8.
- ❍ 회부일자 : 2024. 10. 14.
- ❍ 상정일자 : 2024. 10. 14.

2. 제안이유

- ❍ 우리 군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 안정 및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❍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❍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(안 제6조)
- ❍ 업무 등의 위탁(안 제8조)
- ❍ 중복지원의 제한(안 제10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❍ 「청소년기본법」 제5조제4항에서 **‘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·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’**고 규정하고, 제8조에서 지자체는 **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**하여 **시행**하도록 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❍ 고령, 장애,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을 지원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❍ 안 **제2조(정의)**에서 우리 군의 가족돌봄 청소년 대상 연령을 9세 이상 24세 이하[1]로 명시함.

---

1) **「청소년 기본법」**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❍ 안 **제6조(지원사업)**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함.

<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지원사업 >

1.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
2.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
3.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·정서 상담 지원사업
4.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
5.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
6.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·체육활동 지원사업
7.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의료 지원사업
8.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
9.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
10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

❍ 안 **제10조(중복지원의 제한)**에서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에게는 지원을 제한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함.

5. 종합검토의견

❍ 지자체는 청소년들에게 복지와 교육 등을 제공할 책무를 가지고 있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가족 돌봄이라는 부담까지 떠맡아 본인의 학업 등을 포기할 위기에 처하는 **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을 이행**하는 것이고, **자치사무로써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조례를 마련**하는 것은 합당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2024 新취약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(보건복지부)

1 사업 주요 내용

□ **(추진근거)** 「청년기본법」 **제21조,**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

□ **(사업목표)** **'24년** 가족돌봄 2,400명, 고립은둔청년 960명 발굴·지원

□ **(사업기간)** **'24년 4월 ~ '25년 12월**

※ **'25년 공모 미시행**, '24년 선발지역 사업 연속 이행(기관 및 인력 승계)

□ **('24년 예산)** 국비 3,403백만원 / 자치단체보조(서울 50%, 기타 70%)

○ **(가족돌봄)** 20.9억 원(서울**4.0**억 / 타시도**5.6**억 지원)

○ **(고립은둔)** 13.1억 원(서울**2.5**억 / 타시도**3.5**억 지원)

(국비 기준, 단위 : 백만원)

구분	총액	인건비	사업비	운영비
가족돌봄	2,094	435 (총 24명분, 10개월)	1,591 (자기돌봄비 1,248: 총 960명분 / 기타)	68 (서울13, 기타18)
고립은둔	1,309	650 (총 32명분, 10개월)	413 (정서회복, 공동생활 등 맞춤형 프로그램)	244 (서울46, 기타66)

○ **(청년인턴 파견)** 352백만원

- 월 210만원 x 24명(시도당 6명) x 최대 7개월, 국비 100%

※ 실시 지자체 선정 후, 복지부에서 채용(4월) → 해당시도 민간수행기관 파견(6월~)

2 사업별 주요 프로그램

< 1. 가족돌봄청년 지원(새로운 복지 전달체계) >

□ (자기돌봄비) 지급·관리 구체적 방안 별도 안내

○ 대상자 정의, 선정기준, 지급절차, 관리체계 등 마련

◈ (기본방향) **가족돌봄청년 정의**는 향후 별도 정책 카테고리화를 통한 보장성 **확대 관점에서 접근 (※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지속 추진)**

- **복지대상자로서 가족돌봄청년을 별도** 카테고리화하여, **간병·요양돌봄** 등 기존 서비스 **우선·특례 대상자**로 **지원 확대 추진**
- **다만, 현금수당**인 **자기돌봄비**는 중장기 **재정제약 하, 정확한 규모예측** 및 **객관적 지급기준 마련 필요 방향**

□ (가족돌봄청년 정책 카테고리화*) 공적서비스 보장성 확대

* 복지부에서 제시한 가족돌봄청년 정의 기준

○ **(부양가족 돌봄)** 노인장기요양보험, 장애인활동지원, 중대수술 후 퇴원환자 간병서비스 등 선정 편의, 시간 확대 등 추진 **(복지부 내 협의)**

○ **(일상돌봄서비스 우선 연계) 중대수술 후 퇴원환자 중심으로 발굴 후 적극 연계 추진 ('24.7월 일상돌봄서비스 온라인 신청 추진 중)**

○ **(대학생, 초중고생 대상 민간장학금 연계)** 가족돌봄청년으로 선정시 우선 연계될 수 있도록 선도사례 발굴('24년, 우리은행 인턴십 프로그램 등)

□ 자체 프로그램 기획 운영

○ 자조모임 운영*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나 지자체 여건 상황 등에 따라 다른 효율적 프로그램으로 대체 가능

* 자립준비청년 '**바람개비 서포터즈**' 모델 등 (참고)

* 지역사회 내 사회공헌 무료 도시락 배달을 (주로 1인가구 노인 대상) 가족돌봄청년가구로 확대 (식사준비 등 부담을 낮추고, 미래준비 도모)